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32호

망미7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5-1번지 일원 망미7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8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 역 명	위 치	구역면적 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망미7 재개발 정비구역	수영구 망미동 445-1번지 일원	68,386.6	2028. 6. 24.까지	-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 부터 2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051-888-4234), 수영구 건축과(051-610-4662)에 관계서류 비치